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제2항 본문 분 중 “비영리법인을”을 “비영리법인으로 산학융합원 등을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5제2항을 제29조의5제4항으로 하고, 제29조의5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5(산학융합지구 지정)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, 제2종전용주거지역,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

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”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.

제29조의7중 “지정 및 변경”을 “지정, 운영 및 변경”으로 하고, 이를 제29조의7제1항으로 하며, 제29조의7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7(산학융합지구의 지원 등) ②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은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교지에 지정시 1만㎡ 이상의 경우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58조의5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5(개발이익의 채투자) ⑦ 법 제45조의6 제2항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채투자 회수금
2. 회계 상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3. 그 밖에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재원

⑧ 법 제45조의6 제2항에 따른 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 채투자 대상사업의 관리·유지·보수·개량 및 확충 비용
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·정비비용
4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내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·운영비용

5.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6. 그 밖에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써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비용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4(산학융합지구 신청) ① (생략)	제29조의4(산학융합지구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영리법인”이란 기업(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연구소,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 른 <u>비영리법인을</u> 말한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.	② 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영리법인”이란 기업(기업으로 구성 된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, 연구소, 대학 등이 공동 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<u>비영리법인으로 산학융합원 등을</u> 말한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」 제2 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5(산학융합지구 지정) ① (생략)	제29조의5(산학융합지구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
현행	개정안
<신 설> ② (생략) 제29조의7(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)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<u>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</u>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, 제2종전용주거지역,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”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.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29조의7(산학융합지구의 지원 등) ①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, 운영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신 설>	②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은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③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교지에 지정시 1만㎡ 이상의 경우 「산업입지

현행	개정안
	<u>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u>
제58조의5(개발이익 재투자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8조의5(개발이익 재투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법 제45조의6 제2항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. 회계 상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. 그 밖에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재원 ⑧ 법 제45조의6 제2항에 따른 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의 관리·유지·보수·개량 및 확충 비용 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조사·연구비 3.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·정비비용 4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내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·운영비용 5.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. 그 밖에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
<u><신설></u>	

현	행	개	정	안
				<u>필요한 지출로써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비용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438